



KOSCA
대한전문건설협회
대전광역시회

수 신 회원 각위

참 조

제 목 「굴착공사 신고제도」 안내 및 홍보 요청

1.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굴착공사 관련 지하매설물 파손 등 사고 예방을 위해 「굴착공사 신고제도」 홍보를 요청해와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내용

가. 제도개요

- 토지의 굴착공사 시 사전에 공사계획 통보 후 굴착 필요
※ 근거법률: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등

나. 대 상

- 도시가스사업 허가 지역,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지역, 고압가스 배관 매설 지역 등

다. 절 차

-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시작 24시간 전까지 공사계획 신고
 - 발주자명, 굴착공사 회사명 및 담당자, 공사위치, 굴착길이 및 공사에정일자 등
 - 홈페이지(www.eocs.or.kr), 모바일앱(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), 콜센터(1644-0001)
- 굴착현장 배관 등 확인·표시 및 굴착공사 개시

라. 주의사항

- 굴착 미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재 부과
※ 근거법률: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등

붙 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1식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 장 윤 태 연



담당자 주임 박경재 협조자 부장 이재관 실장 하재중 사무처장 경승현

시 행 전건협 대전 제239호(2026. 5. 12.)

우35233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220번길 54, 3층(둔산동, 전문건설회관)/<https://daejeon.kosca.or.kr/>

전 화 042-472-5191 전 송 042-472-5197 전자우편 paxrk@kosca.or.kr